

전주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2547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8. 6. 19.

판결 선고 2018.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22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2, 8, 9, 10, 11, 12,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단층 가건물 96㎡와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화장실 4㎡를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6. 피고 소유이던 전주시 완산구 C 대 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2, 8, 9, 10, 11, 12,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단층 가건물 96㎡와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화장실 4㎡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3) 원고는 2015. 9. 24. 이 법원 2015가소5056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 관련 지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7.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6나6654호 사건에서 2017.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6나6654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결정사항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2017. 7. 31.까지 5,740,238원¹⁾ 및

2) 2016. 10. 1.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지 226㎡'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인 1,746,4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 위 가의 2)항 기재 금원의 지급시기는,

1) 매년 9월 30일에 그 직전 1년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1,746,440원을 지급하고(예를 들어, 2017. 9. 30.에는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지료를 지급한다).

2)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이 있는 해에는, 일수(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 당일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피고가 위 가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미지급 금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가 있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 관련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피고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287조에 근거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피고의 2년 이상의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2017. 8. 2.경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2, 8, 9, 10, 11, 12,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단층 가건물 96㎡와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화장실 4㎡를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신

별지

1) 2013. 1. 17.부터 2015. 9. 30.까지의 지료 상당 부당이득 합계 4,593,798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60만원을 공제한 3,993,798원 +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지료 상당 부당이득 1,746,440원